

제 25-10호

2025. 10. 16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책임작성

선용욱 부연구위원

(044-960-5307 / ywsun@kosi.re.kr)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

※ KOSI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논의 배경 및 목적
2. 토큰증권 개념과 특징
3.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동향
4. 중소기업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요 약

◆ 논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목적) 본고는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작성

◆ 토큰증권 개념과 특징

- (정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상품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토큰증권발행은 토큰증권의 형태로 상품화된 자산의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 (특장점)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방식과 다르게 분산원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명성, 경제성 등의 혜택을 제공
 - (유동성)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형태로는 분할이 어려웠던 자산의 권리를 적은 비용으로 분할 및 상품화 가능
 - (투명성) 토큰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함으로써, ①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투명한 계약(예: 소유권 이전, 배당금 지급 등) 이행과 ② 검증된 다수 투자자 간의 P2P(Peer-to-Peer) 거래 등이 가능
 - (경제성) 검증된 중개인 없이도 365일 24시간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증권 거래 단계에서 발생 하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

◆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동향

- (주요내용) 2023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토대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 중
 -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① 토큰증권을 증권에 전자등록방식으로 수용하고, ② 토큰증권 직접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①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제도화하고, ② 다수 투자자 간의 P2P 장외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기 어려웠던 비정형적 자산을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유통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
 - (투자계약증권)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직접 운용하여 창출되는 손익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제3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제시

<토큰증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안)>

구 분	정책 방향	추진 전략(안)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민간주도 연계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통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도 정부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토큰증권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조달받은 대상에게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안전성 확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관(가칭)'을 선정하여, 개인투자자도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개인투자자 인센티브 마련	중소기업 투자 특례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하거나, 투자 대상별로 배당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개인의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증권화 부담 완화 (기술보호 + 기술평가)	정부 또는 민간이 선정 및 추천한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을 기술 자료임치제도 등을 통해 보호·보증하고, 토큰증권 발행에 앞서 기술 가치평가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가치를 입증
	매출수익권 증권화 부담 완화 (정보 투명화 + 분배 자동화)	POS 단말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매출 정보를 분산원장에 반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수익을 투자자에게 자동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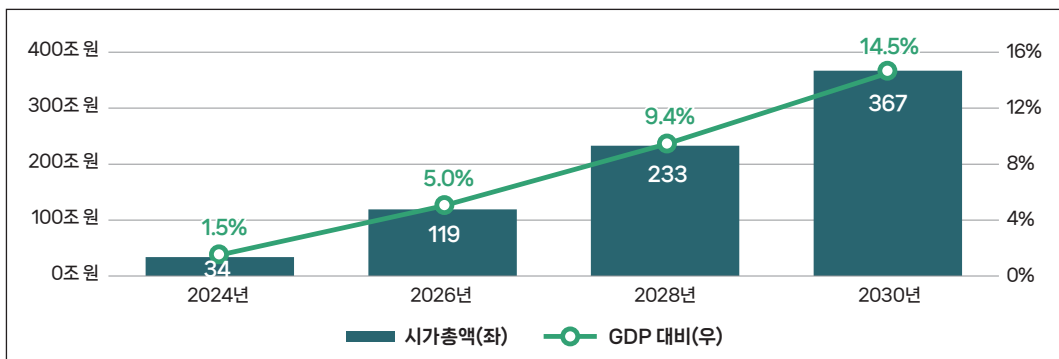
01 | 논의 배경 및 목적

가. 논의 배경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토큰증권은 다양한 자산을 적은 비용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높은 시장성 및 성장성이 예상

- 신석영(2023)은 토큰증권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자금의 규모가 2030년에 약 3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GDP의 14.5%에 해당하는 수준

그림 1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 전망



* 자료 : BCG(2022)을 바탕으로 신석영(2023) 작성

◆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토큰증권의 법제화 추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안으로, 토큰증권을 법제화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김예슬, 2025)
- 정무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전자증권법¹⁾」 및 「자본시장법²⁾」 일부법률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선정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장순환, 2025; 한종욱, 2025)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

표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토큰증권 관련 내용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 내용
이재명 당시 후보 (더불어민주당)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
김문수 당시 후보(국민의힘)	토큰증권(STO) 법제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거래 허용 등 신속한 제도화

* 자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2025)

-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포함되면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본격화될 전망(국정기획위원회, 2025)
 - 이재명 정부는 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②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③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계획을 발표
 - 이 중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에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³⁾를 활용하고 계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 금융산업, 자본 시장 등 3대 대전환의 내용이 포함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금융위원회, 2025)
 - 금융위원회는 초기 창업기업과 중기 성장기업이 보유 자산 및 사업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 받을 수 있도록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나. 논의 목적

- ◆ 본고는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작성
 - (개념·특징) ① 토큰증권과 관련된 용어, ② 토큰증권의 특징점, ③ 토큰증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등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의 개념을 정립
 - (규율체계) 토큰증권의 국내 법제화에 대한 ① 추진 경과와 ②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③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관점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
 - (활용방안) 토큰증권의 활용방안과 향후과제를 ① 증권 발행인(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② 증권 투자자(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3)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란 미리 설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분산원장에 프로그램화된 계약을 의미

02 | 토큰증권 개념과 특징

가. 토큰증권 관련 용어

◆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투자 상품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토큰증권의 형태로 투자 상품화된 자산의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 (토큰증권)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투자 상품화하는 방식(금융위원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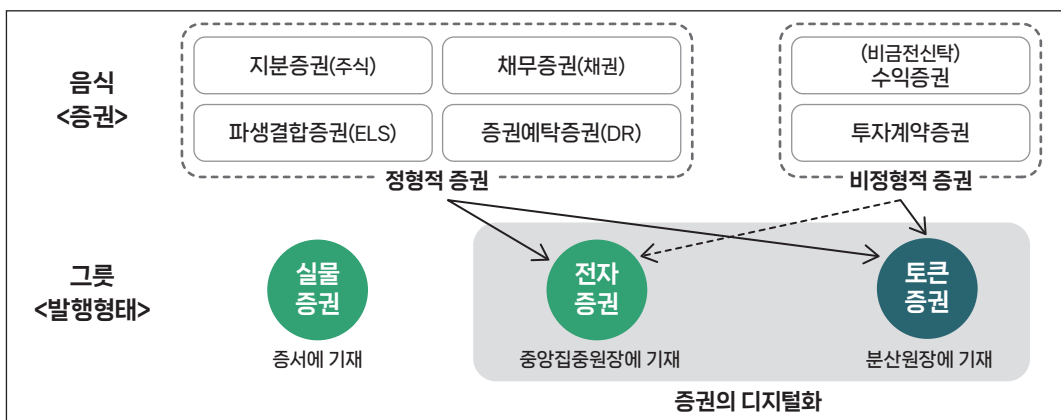
- (분산원장)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정보통신용어사전)

-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산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로 ① 지분증권, ② 채무증권, ③ 파생결합증권, ④ 증권예탁증권, ⑤ 수익증권, ⑥ 투자계약증권 등 존재(「자본시장법」)

- (디지털화)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생, 소멸,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재하는 행위(「전자증권법」)

• (토큰증권 발행)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투자 상품화한 자산을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그림 2 토큰증권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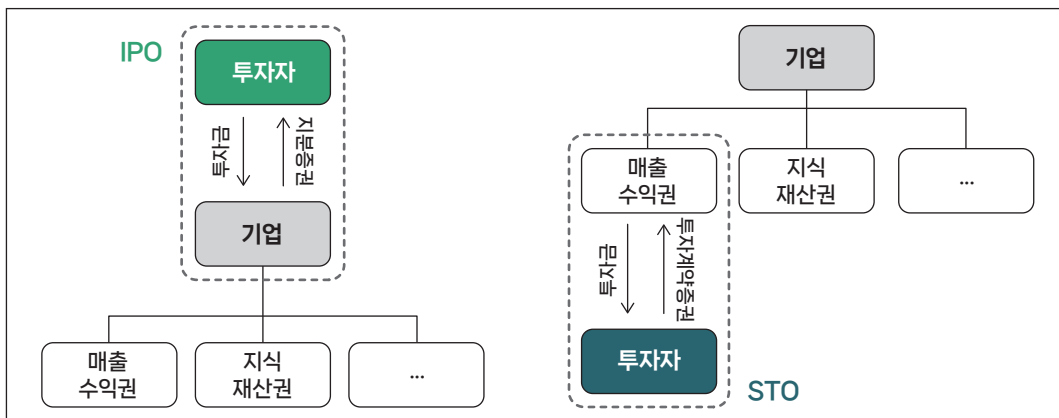
* 자료 : 금융위원회(2023)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토큰증권의 특징점

◆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방식과 다르게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명성, 경제성 등의 혜택을 제공

- (유동성)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형태로는 분할이 어려웠던 자산의 권리를 적은 비용으로 분할 및 상품화 가능
 - (발행인)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형태로는 투자 상품화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의 권리 (예: 매출수익권, 지식재산권 등)를 유동화하여 자금조달 기회 확대
 - (투자자) 소유권 분할이 어려워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하던 자산을 적은 비용으로 분할하고 상품화되지 않았던 자산을 상품화하여 투자의 대상 및 액수를 다양화
- (투명성) 토큰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함으로써, ①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투명한 계약(예: 소유권 이전, 배당금 지급 등) 이행과 ② 검증된 다수 투자자 간의 P2P(Peer-to-Peer) 거래 등이 가능
- (경제성)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검증된 중개인 없이도 365일 24시간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증권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

그림 3 기업공개(IPO)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조달 비교 예시



다. 토큰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게 증권의 발행, 유통, 청산의 단계를 거치지만, 분산 원장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차이 존재

- **(발행)**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적격 투자자에게 증권을 자동적으로 배정 가능
 -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은 소유권 변동 등이 중앙집중원장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증권 발행인이 계좌 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가 제한적
- **(유통)** 실물증권 및 기존의 전자증권과 다르게 토큰증권은 위탁사(브로커-딜러)의 개입 없이도 유통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 간의 P2P 장외거래가 가능
 - 작성일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시장과 대체거래소 외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1:1 거래)가 원칙(「자본시장법」)
- **(청산)** 토큰증권의 소유 내역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과 다르게 분산원장에 기재되나, 토큰증권의 청산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중앙청산소에서 진행
 - 우리나라보다 앞서 토큰증권을 법제화한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증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공태인, 2021)

표 2 토큰증권과 실물·전자증권의 생애주기 비교 분석

단 계		실물증권 및 전자증권	토큰증권
발행 (Primary issuance)	발행	- (발행인) 증권 발행 규모 및 주관사 결정 - (주관사) 증권 발행 주관	- (발행인) 발행 규모 및 발행플랫폼 결정 - (발행플랫폼) 토큰증권 발행 주관
	청약·배정	- (투자자) 거래소 상장 예정인 증권을 주관사 계좌를 통하여 공모가로 청약 - (주관사) 투자자에 증권 배정	- (투자자) 발행 예정인 토큰증권에 대한 공모 또는 사모로 참여(청약) - (발행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투자자에게 토큰증권 배정
	명의 변경	-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 관리기록	-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 관리기록
유통 (Secondary market)	주문·체결	- (투자자) 거래소에 상장된 위탁사 (브로커-딜러)를 통하여 주문	- (발행인, 발행플랫폼) 발행플랫폼에서 유통플랫폼으로 토큰 연결 - (유통플랫폼) 토큰 상장 및 관리 - (투자자) 원하는 증권을 유통플랫폼 (거래소, 장외거래소 등)를 통해 주문
청산 (Clearing)		- 중앙집중원장에 소유 내역 기재 - 중앙청산소(예탁원 등)를 통해 청산	- 분산원장에 소유 내역 기재 - 중앙청산소(예탁원 등)를 통해 청산
증권 규제 준수			

* 자료 : 공태인(2021), 이종성고증문(2023)을 바탕으로 재작성

03 |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동향

가.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경과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논의될 예정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증권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토큰증권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제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

- 제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을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발의되었으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표 3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발표 / 발의
2023년 2월 6일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2023년 7월 28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533)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531) 발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2024년 5월 29일	윤창현 의원(안)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2024년 10월 25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1)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9) 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2024년 11월 19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3)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1) 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년 2월 18일	김재섭 의원(안) 및 민병덕 의원(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
2025년 3월 21일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8) 및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0) 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년 3월 24일	강준현 의원(안) 정무위원회 회부	-

*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토큰증권 법제화 주요내용

◆ 2023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토대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⁴⁾가 추진 중

-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① 토큰증권을 증권의 전자등록방식으로 수용하고, ② 토큰증권 직접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
 - ① '분산원장' 및 '분산원장등록주식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에 등록된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
 -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예: 증권사, 은행 등) 또는 전자등록기관(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활용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①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② 다수 투자자 간의 P2P 장외거래를 허용
 - ①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던 단서를 삭제하여,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거래 방법⁵⁾'의 예외 대상으로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포함하여, 다수 투자자 간의 P2P 거래를 허용

표 4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의 미	기대효과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및 '분산원장등록 주식등'에 대한 정의 마련	토큰증권을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	-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투자자보호책 적용 - 다양한 자산의 유통화를 통한 투자 접근성 제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마련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최소의 투자 안전성 확보
「자본시장법」	증권 유통의 예외 조건에서 '투자계약증권' 등을 삭제	투자계약 증권 등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비정형적인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거래 허용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장외 거래의 예외 대상으로 '장외 거래중개업자' 등 추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수 투자자 간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토큰증권의 유통플랫폼을 통한 다수 투자자 간의 P2P 거래 환경 조성

4) 「전자증권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

5) 작성일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시장과 대체거래소 외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1:1 거래)가 원칙(「자본시장법」)

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사례

◆ 토큰증권의 법제화는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기 어려웠던 비정형적 자산을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유동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

- (투자계약증권) 중소기업은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직접 운용하여 창출되는 손익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해당 자산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개념)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자본시장법」)

- (활용사례) 백년가게의 매출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LS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한국ST 거래'가 해당 증권을 장외에서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유통 및 관리하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⁶⁾로 선정되어 연내 출시 예정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중소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통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제3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개념) 특허 등의 비금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자산을 신탁업자 등이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활용사례) 'Intellectual Ventures'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한 특허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기초 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였으며, 'Royalty Pharma'는 의약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Patent Monetize)

- (그 외 정형적 증권) 기존의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던 정형적 증권(예: 주식 등)도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될 수 있지만, 증권의 기초자산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활용사례) 포르쉐에 인수된 크로아티아의 전기 자전거 제조회사 Greyp Bikes가 토큰증권을 활용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분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기업공개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슈 존재(김태균, 2025)

6) 현재 국내에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

04 | 중소기업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표 5 토큰증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안)

구 분	정책 방향	추진 전략(안)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민간주도 연계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통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도 정부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토큰증권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조달받은 대상에게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안전성 확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관(가칭)'을 선정하여, 개인투자자도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개인투자자 인센티브 마련	중소기업 투자 특례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하거나, 투자 대상별로 배당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개인의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증권화 부담 완화 (기술보호 + 기술평가)	정부 또는 민간이 선정 및 추천한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을 기술 자료임치제도 등을 통해 보호·보증하고, 토큰증권 발행에 앞서 기술 가치평가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가치를 입증
	매출수익권 증권화 부담 완화 (정보 투명화 + 분배 자동화)	POS 단말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매출 정보를 분산원장에 반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수익을 투자자에게 자동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가.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 (민간주도 연계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통한 민간(개인, 기관)의 투자가 정부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범위에 토큰증권을 통한 투자를 포함

- (현황)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간 기관의 검증과 투자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민·관 연계형 지원 체계의 구축은 다소 미흡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의 경우, 검증된 민간 기관이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에 투자를 진행하면 정부가 해당 투자 대상에게 매칭융자,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
- (정책 방향) 토큰증권을 통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도 정부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토큰증권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조달받은 대상에게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영업활동 등에 따른 손익을 기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해당 발행인의 자산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방증
 - 다만, 민·관 연계형 지원의 범위에 토큰증권을 통한 투자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통한 최소 투자 금액⁷⁾, 특수관계인 투자 제외 등에 대한 기준의 선행적인 마련이 필요

7)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의 경우에는 1~5천만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아야 지원 가능

나.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마련

◆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안전성 확보)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⁸⁾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지원

- (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보 불투명성과 투자 위험성 등으로 인해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와 연계된 사례는 제한적
 - 신산업 창업 분야 등의 유망 스타트업과 라이콘 등의 유망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리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민간 기관이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투자 상품화한 사례는 제한적
- (정책 방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관(가칭)'을 선정하여, 개인투자자도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초자산의 시장성·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상품개발역량과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투자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투자자 인센티브 마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매출수익권 등을 유동화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토큰증권을 통한 개인의 스타트업·소상공인 투자 유인책 마련

- (현황) 중소기업 지분증권(주식)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펀드) 등 정형적 증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비

표 6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표 사례

투자 대상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소관 부처
중소기업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 소득세 등의 감면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기획재정부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행정안전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 (정책 방향) 중소기업 투자 특례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하거나, 투자 대상별로 배당소득세율⁹⁾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개인의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소상공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협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의 현실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8) 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신사업 창업 분야, 백년가계, 기업가형 소상공인(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등

9)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는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가 아닌 9%의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778)을 발의하며, 투자 소득 규모별 배당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

◆ (지식재산권 증권화 부담 완화)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을 연계 제공하여, 토큰증권의 형태로 투자 상품화된 유망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증 및 보호

- (현황)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투자 상품화할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기술의 일정 부분을 공개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 한편, 작성일 기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보관 및 보호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기술이전·거래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참고용으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

표 7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대표 사례

사업명	수행기관	기술가치평가 용도	지원 규모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거래용	중소기업 5개사 (건당 최대 1천만 원)
기술임치기업 기술가치평가·IR지원사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투자참고용	중소기업 10개사 (건당 최대 1.5천만 원)

- (정책 방향) 정부 또는 민간이 선정 및 추천한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을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을 통해 보호·보증하고, 토큰증권 발행에 앞서 기술가치평가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가치를 입증
 -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이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및 보증되며 투자 상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유망 기술의 시장성 및 성장성을 투자자에게 제시

◆ (매출수익권 증권화 부담 완화) 소상공인 등의 매출 정보를 투명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매출수익에 대한 투자자 분배를 자동화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

- (현황) 소상공인 등의 매출수익권을 기초로 한 증권이 발행 및 유통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매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등은 매출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POS 단말기는 약 338만 대로 추정되고 소상공인의 수가 약 791만명을 고려할 때, 현재 소상공인의 POS 도입률은 높지 않은 상황(Robert Prendergast, 2024; 중소벤처기업부, 2025)
- (정책 방향) POS 단말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매출 정보를 분산원장에 반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수익을 투자자에게 자동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매출수익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POS 단말기 등의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하여 매출 정보가 분산원장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발행 이후 매출 미신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참고자료

[외국 문헌]

Boston Consulting Group. (2022). Relevance of On-chain Asset Tokenization in 'Crypto Winter'.

[국내 문헌]

공태인. (2021). 미국 증권형토큰 시장동향 및 정책논의. 금융투자협회.

신석영. (2023). 토큰증권(ST) 시대의 개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종성, 고종문. (2023). STO 토큰증권 발행. 지식공감.

[보도 자료]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5.05.26.).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08.13.).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2025.09.19.).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의결」. (2025.05.02.).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0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5년 기술임치기업 기술가치평가·IR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5.07.10.).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25.05.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5.03.1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24.12.26.).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5.08.29.).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01.16.).

[법률안]

- 강준현, 윤준병, 이병진, 박정현, 복기왕, 민병덕, 이광희, 문진석, 김교흥, 전진숙, 이인영, 김현정, 천하람, 김주영. (2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강준현, 윤준병, 이병진, 박정현, 복기왕, 민병덕, 이광희, 이재관, 문진석, 김교흥, 전진숙, 이인영, 김현정, 천하람, 김주영. (2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김재섭, 송언석, 인요한, 김기웅, 배준영, 주호영, 유용원, 김장겸, 김상훈, 최보윤, 최은석. (2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9.
- 김재섭, 송언석, 인요한, 김기웅, 배준영, 주호영, 유용원, 김장겸, 김상훈, 최보윤, 최은석. (202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1.
- 민병덕, 박민규, 이수진, 김남근, 김현정, 김재원, 박정현, 송재봉, 김영환, 김한규. (2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민병덕, 박민규, 이수진, 김남근, 김현정, 김재원, 박정현, 송재봉, 김영환, 김한규. (202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윤창현, 윤한홍, 정우택, 김희곤, 성일종, 이종성, 송석준, 정희용, 최승재, 김웅. (2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31.
- 윤창현, 윤한홍, 정우택, 김희곤, 성일종, 이종성, 송석준, 정희용, 최승재, 김웅. (20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33.

[기사]

- Robert Prendergast. 「South Korea card payments market to reach almost \$1 trillion in 2024」. 『GlobalData』. (2024.07.15.)
- Sanaullah Ashrafi. 「How Patent Securitization is Reshaping IP Finance」. 『Patent Monetize』.
- 김예슬. 「李정부 '토큰증권' 법제화 드라이브... 국회 정무위 "8월 중 통과 가능성"」. 『서울신문』. (2025.07.22.).
- 김태균. 「토큰증권, 정부 시행 따른 활용처는... "부동산·벤처 주식"」. 『연합뉴스』. (2025.07.13.).
- 장순환. 「[가상자산 이모저모] 또 연기된 STO 법안 심사... "이번엔 다르다"」. 『연합인포맥스』. (2025.07.28.).
- 한종욱. 「정무위 문턱서 정제된 STO 법안, 8월 통과 안갯속...관련주 약세」. 『뉴스웨이』. (2025.08.05.).

[인터넷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검색일: 2025.08.11).
-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s://terms.tta.or.kr/>(검색일: 2025.08.0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검색일 2025.08.07.).

<참고> 제22대 국회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참고 1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현행 조문	개정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생략)	1. ~ 3.(생략)
<신설>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4.(생략)	4.(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 7.(생략)	5. ~ 7.(현행과 같음)
<신설>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참고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현행 조문	개정 조문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약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삭제>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통하여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1. 협회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발 행 인 조주현

편 집 인 이동주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 쇄 처 디플러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